

# 특약 변경 대비표

- 약관명 : 「급여하나일복리 적금」 특약
- 변경 시행일 : 2019년 3월 4일(월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- 주요 변경 내용 : “청년직장인특별금리” 신설

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(연2.0%)	<u>-[신설]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2019.3.4~6.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,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최초 1년간 연2.0%의 특별금리 제공(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)</u></li> <li>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(※) 경우</li> <li>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</li> <li>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,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(또는 현대카드)결제실적(신용/체크)을 보유한 경우 (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)</li> <li>(※) 재직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</li> </ul>	특별금리신설